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8호

도시관리계획(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) 고시 일부 취소 고시

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청구(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취소 등)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 바, 행정심판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2016.9.8.일에 고시된 「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」 중 일부가 취소되었음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2월 22일
서울특별시

I. 취소경위

-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 ('16.12.5.)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(결과:청구인 주장 인용) ('18.1.16.)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 (위원회→市) ('18.2.5.)

II. 국제교류복합지구(코엑스~잠실종합운동장 일대) 지구단위계획 취소 내용

■ 결정(변경)조서 중 “도로 확폭”, “보행자우선도로 지정”, “공동개발특별지정” 취소

(1) 도로결정(변경)조서 (기정내용 취소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
	등급	류별	번호	폭(m)					
기정	소로	1	634	10	국지 도로	78	삼성동 165-15	삼성동 164-6	보행자우선도로
변경	소로	3	634	6	국지 도로	78	삼성동 165-15	삼성동 164-6	일반도로

- 취소 사유 :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(10m 미만)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전검토계획 미수립

(2) 가구 및 획지 계획

구분		계획내용	
		기정	변경
공동 개발	특별 지정	·도로 기반시설 확보 (보행자우선도로변 폭 4m 이상) - 적용필지 : 강남구 삼성동 166,166-1,166-2,166-3,166-4	-

■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가구			획지					비고
구분	번호	면적(㎡)	구분	위치	필지면적(㎡)	대지면적(㎡)		
기정	C8	7,608.5	기정	삼성동 166대	996.3	901.4	3,592.5	공동개발 특별지정 (주보행축 연결구간 기반시설 확보)
				삼성동 166-1대	748.2	666.6		
				삼성동 166-2대	569.8	432.4		
				삼성동 166-3대	834.7	-		
				삼성동 166-4대	757.4	-		
변경	C8	7,922.5	변경	삼성동 166대	996.3	-		-
				삼성동 166-1대	748.2	-		-
				삼성동 166-2대	569.8	-		-
				삼성동 166-3대	834.7	-		-
				삼성동 166-4대	757.4	-		-

- 취소 사유 : “도로확폭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”을 전제로 하는 결정이므로 위법

III. 관계도면

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IV. 열람장소

서울특별시 동남권계획반(☎02-2213-8229), 강남구 도시계획과(☎02-3423-6112)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